

강원도립대학교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1998-03-31 규정 제008호

(개정) 2000-10-19 규정 제079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개정) 2022-06-14 규정 제60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5조에 따라 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 공정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은 보직교수를 제외한 평교수중에서 총장 추천에 의해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구성한다.

제3조(위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는 신입생 원서 접수일로부터 입시업무의 자체 감사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시부정 방지대책 수립
2. 입시관리를 감시하여 공정성 확보
3. 입시관리 주요과정 입회
가. 원서접수 나. 전산처리과정 다. 실기고사 라. 합격자 사정
마. 기타 입시부정 방지에 필요한 사항의 관리감독
4. 입시관련 자체감사 실시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⑥ 위원회의 의결 사안은 즉각 총장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토록 한다.

제7조(간사 및 주관부서) 위원회는 기획홍보처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입학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4.25., 2022.6.14.>

부칙(1998.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교이전에 최초 신입생에 대한 입시 공정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대학 개교 준비 단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후 새로이 구성하는 입시 공정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10.19.)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5호, 2022. 6.14.)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